

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SEALANT-LX-LG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실란트
건축용 씰링제,
프라스틱용 씰링제
사용상의 제한 산업용으로만 사용

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제조자

회사명 한국신에츠실리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7-23 GT타워 15층
담당부서 업무부
전화번호 + 82(0)2-590-2500
FAX번호 + 82(0)2-590-2501

공급자

회사명 한국신에츠실리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7-23 GT타워 15층
담당부서 업무부
전화번호 + 82(0)2-590-2500
FAX번호 + 82(0)2-590-2501
응급상황 + 82(0)2-590-2500
이메일 msds@shinetsu.net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리적 위험성 분류되지 않음.
건강 유해성 피부 과민성 물질 구분 1
환경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이곳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성은 "분류되지 않음", "적용되지 않음" 또는 "분류가 가능하지 않음"임.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o 신호어 경고

o 유해·위험 문구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o 예방조치 문구

예방

P261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말 것.

대응

P302 + 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 및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오.
P333 + 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P363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할 것.

폐기

P50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할 것.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메탄올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식별번호	함유량(%)
알콕시실란		영업기밀	영업기밀	1 - 5
이산화 티타늄		13463-67-7	KE-33900	0.1 - 5

4. 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다량의 물로 적어도 15분간 씻어낼 것. 용이하다면 콘택트 렌즈를 빼 것.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낼 것. 피부에 약간 접촉된 경우에는 다른 피부 부위에 물질이 묻지 않게 할 것.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증세가 나타나거나 지속되면 의료진에 문의하십시오.
- 라. 먹었을 때: 입을 씻어낼 것.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증상에 따라 처치하십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물 안개, 포말,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CO2).
 - 부적절한 소화제: 알려지지 않음.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열을 받거나 화재 발생시, 유해한 증기/가스를 형성할 수 있음.
-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화재 진압 후, 불꽃에 노출된 용기를 물로 충분히 식힐 것.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필요없는 인원은 멀리 대피시킬 것. 누출정도가 심각해서 통제할 수 없다면,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함. 누출된 물질을 만지거나 그 위로 지나가지 말 것. 적절하게 환기가 되도록 할 것. 적합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추가 누설 또는 누출을 방지할 것.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점화원을 제거할 것.
 - 대량 누출: 가능한 경우 누출된 물질 주위로 도랑을 팔 것.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시트로 덮을 것. 질석, 모래 또는 흙 등의 비가연성 물질로 제품을 흡수시킨 후, 후속처리를 위하여 용기에 수거 할 것.
 - 소량 누출: 흡착재질(예. 천, 플리스(fleece))로 닦아 낼 것. 잔여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을 철저히 세척 할 것.
 - 절대로 얼질러 진 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본래 용기에 넣지 말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적절한 환기장치를 준비하십시오. 취급/보관 시에 주의하십시오. 미스트 또는 증기를 흡입하지 말 것. 피부 접촉을 피할 것.
-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용기를 단단히 밀폐할 것.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직사광선을 피한 차고 건조한 곳에 저장함. 원래 용기에 담아서 보관할 것.

8. 누출방지/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구성성분	종류	값
이산화 티타늄 (CAS 13463-67-7)	TWA	10 mg/m3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구성성분	종류	값
이산화 티타늄 (CAS 13463-67-7)	TWA	10 mg/m3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적절한 일반 및 국소배기장치를 제공할 것. 세안장치 시설을 제공할 것. 국소배기장치같은 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용후 최소한 24시간 동안 문을 개방하십시오.

다. 개인 보호구

- o 호흡기 보호 작업자들이 노출 한계 이상의 농도에서 일할 경우에는 허가된 호흡기를 사용해야 함.
- o 눈 보호 측면 보호면을 갖춘 보안경(또는 고글)을 착용할 것.
- o 손 보호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 o 신체 보호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할 것.

위생대책

피부 접촉을 피할 것. 휴식 시간 전이나 본 제품을 취급한 다음에는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말 것. 우수한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 형태 페이스트
- 색 연한 회색

나. 냄새

알코올 냄새

다. 냄새 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녹는점 해당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64 °C (147.2 °F) [메탄올; 분해생성물]

사. 인화점

68 °C (154.4 °F) 밀폐식 시험 방법

아. 증발 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6.0 % v/v [메탄올; 분해생성물]
-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36.0 % v/v [메탄올; 분해생성물]

카. 증기압

무시할수있음(25°C) [메탄올; 분해생성물]

타. 용해도

불용성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1.45 (23 °C)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해당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 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화학적 안정성 정상 상태에서는 안정함.
- 유해 반응의 가능성 위험한 중합반응이 발생하지 않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자료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강산화제, 물, 습기.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이제품은 물, 습기 또는 습한공기와 반응하여 다음 화합물을 생성함:
 이제품은 물, 산, 또는 염기와 서서히 반응하여 다음의 화합물을 생성함:
 메탄올
 가열 또는 연소에 의해 분해생성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산화탄소와 불완전 연소에 따라 미량의 탄소화합물을 생성함: 이산화규소 포름알데히드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o 호흡기 자료없음.
- o 경구 자료없음.
- o 눈 자료없음.
- o 피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구성성분	종	시험 결과
알콕시실란 (CAS 영업기밀)		
급성		
경구		
LD50	쥐	12300 µl/kg
흡입		
LC50	쥐	> 7605 ppm, OECD 403
아만성		
흡입		
NOAEL	쥐	0.56 mg/l, OECD 413
o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o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o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o 피부 과민성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알콕시실란]	
o 발암성	하기 원료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고, 호흡성 먼지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급된 형태나 통상의 사용 방법으로는 제품에 위험성은 없습니다. 이산화 티타늄	
IARC 단행본. 발암성에 관한 총평		
	이산화 티타늄 (CAS 13463-67-7)	2B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o 생식세포 변이원성	자료없음.	
o 생식 독성		
o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다음 장기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 중추 신경 계.전신 독성.시각 기관.마취작용.[메탄올;분해생성물]	
o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o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다. 기타 정보	이제품은물,수분,습기와반응하여다음의화합물을생성함: 메탄올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구성성분	종	시험 결과
이산화 티타늄 (CAS 13463-67-7)		
수생		
갑각류	EC50	물벼룩(학명 다르니아 마그나) > 1000 mg/l, 48 시간
어류	LC50	Mummichog (Fundulus heteroclitus) > 1000 mg/l, 96 시간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유해성	자료없음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유해성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다. 생물 농축성

라. 토양 이동성

마. 기타 유해 영향

대기중 또는 수분중에서 쉽게 가수분해함. [알콕시실란]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비 고형화 물질:소각처리. 소각설비는 소각시 발생하는 실리카 또는 미분체에 대한 적절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작업자는 호흡기 같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여야한다.
 고형화 물질:매물 또는 소각. 소각설비는 소각시 발생하는 실리카 또는 미분체에 대한 적절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작업자는 호흡기 같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여야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에 연락할 것. 이 물질이 하수구/수로로 유입되지 않게 할 것.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할 것.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빈 용기에 제품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기를 비운 후에도 제품표지의 경고사항을 따를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IATA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국제해상위험물 (IMDG)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허가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리대상 유해물질

이산화 티타늄 (CAS 13463-67-7)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노출기준설정물질

이산화 티타늄 (CAS 13463-67-7)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규제되지 않음.

취급금지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찰물질

규제되지 않음.

취급제한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독물

규제되지 않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규제되지 않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목록현황

국가 혹은 지역

한국

목록명

한국 기준화학물질 목록 (ECL)

목록 등재 (예/아니오)

예

*예는 본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가 정부에 의해 규제되는 재고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추가 정보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대비물질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위험물지정수량 (대통령령 제184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

대한민국.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한민국.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대한민국.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1997-10

개정) 대한민국. 관찰 대상 화학물질 (TCCL 장관 명령 제 6조)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1986-45 개정) 대한민국.

취급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고시 제2001-36, 2001년 3월8일 개정) 대한민국. 취급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TCCL), 기존화학물질목록 (KECI)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목록 1997년이전목록

대한민국.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4조)

2013년 6월 19일

나. 최초 작성일자

2013년 6월 19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해당없음.

라. 기타

자료없음

책임의 한계

기재내용은 대표치이고,규격 및 보증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또한 추천된 산업안전보건조치나 취급방법은 통상의 취급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용도,취급조건은 추천하는 사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일반공업용도로 개발,제조 된 제품입니다.의료용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귀사에서 사전TEST하여,해당용도에 사용하는 것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사용 하십시오.의료용IMPLANT용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